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91028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910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가단30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가단30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9.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5,163,6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없다’ 뒤에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그에 따른 등기접수일인 2015. 4. 6.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고의 위 주장은 스스로 특정한 이 사건 청구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층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층 호 49.68 m'
 지하실 18.48 m'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경기도 시흥시 대 2374 m'
 대지권의 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2251 분의 51.78

-이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판할-

